

새로운 경기

공정한 세상

2020년 경기도 달라지는 행정제도



- 목 차 -

1. 일반행정 분야	3
2. 복지·보건·여성·교육·노동 분야	7
3. 산업·경제, 농어업·축산·산림 분야	24
4. 환경, 도시·교통·건설 분야	35
5. 재난안전, 문화·체육·관광 분야	47

1

일반행정 분야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공공재정환수제 시행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공재정환수제 시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공재정 부정청구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전액 환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는 5배 이내에서 제재 부가금 부과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의 명단 공표 	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('20. 1. 1.)	감사관 (조사담당관)
과세예고 통지대상 확대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예고 의무화 규정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과세예고의 자율화에서 의무화로 변경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예고를 하도록 통지대상 확대 	지방세기본법 제88조 ('20. 1. 1.)	자치행정국 (세정과)
시·도 심사청구 제도 폐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·군세에 대하여 시·도에 심사청구 할 수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방세 행정심판 전치주의 도입과 함께 시·도 심사청구 제도 폐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방세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1년 유예하여 '21년부터 시행 	지방세기본법 제7장 ('20. 1. 1.)	자치행정국 (세정과)
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선정 세무대리인 도입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무료 세무대리인 선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유재산액 5억원 이하 + 소득 5천만원 이하 (배우자를 포함, 보유재산은 부동산, 승용차, 회원권으로 한정)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 	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('20. 3. 2.)	자치행정국 (세정과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3단계 단순누진세율 체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6억원 이하 : 1% - 6억원 초과 ~ 9억원 이하 : 2% - 9억원 초과 : 3% <신 규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구간별 기준금액 및 세율 조정 → 누진 단계 세분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좌동) - 6억 초과 ~ 9억원 이하 : $\left(\frac{\text{해당 주택의 취득당사가액}}{3\text{억원}} \times \frac{2}{3} - 3 \right) \times \frac{1}{100}$ - (좌동)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 특례세율 제외(1~3%→4%) 	지방세법 제11조 (’20. 1. 1.)	자치행정국 (세정과)
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부 합산소득 7천만원(외벌이 5천만원)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* 취득세 50% 감면 *취득가액 3억원(수도권 4억원) 이하, 전용면적 60㎡이하 주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(1년) - 일몰기한 : ’20.12.31. 	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(’20. 1. 1.)	자치행정국 (세정과)
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전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세 부가세 성격의 개인지방소득세 체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동시신고 - 국세청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내역을 지자체에 전산통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전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은 세무서, 지자체신고센터 어디서나 신고가능(5월 한정) - 양도소득세는 기존과 동일,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은 세무서에서 신고 후 모두채움신고서 발송 -> 모두채움신고서로 납부 시 신고·납부한 것으로 같음 	지방세법 (’14.1.1. 법률 제12153호)부칙§13	자치행정국 (세정과)
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내 거주 또는 사업장이 있는 프리랜서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마련 	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(’19. 10. 1.)	공정국 (공정소비자과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신용카드 또는 예금계좌 자동이체 납부 범위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신용카드 또는 자동이체 납부 제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를 신용카드 또는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 납부 가능 	지방세징수법 제23조 제2항, 제24조 (’20. 1. 1.)	공정국 (조세정의과)
압류재산 해제 요건 확대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압류해제 가능 	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2항 (’20. 1. 1.)	공정국 (조세정의과)
공매되는 압류재산의 매수 제한 대상자 추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·간접적으로 압류재산 매수 금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매되는 압류재산 직·간접적으로 매수 금지 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체납자 - 세무공무원 -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 업자 ※ 감정평가법인인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 포함 	지방세징수법 제77조 (’20. 1. 1.)	공정국 (조세정의과)
경기도 체납관리단 채용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기도 체납관리단 채용 - 1,262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기도 체납관리단 채용 확대 - 1,783명(521명 증가) 	경기도 자체계획 (’19. 1. 1.)	공정국 (조세정의과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경기도 특사경 수사정보시스템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사정보를 수기로 입력·관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사정보시스템에 전산 입력 및 통계 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사정보 전산 관리를 통한 사건 진행 관리 민생범죄 통계 정보 공개 등 	('20. 1월 예정)	공정국 (민생특별사법 경찰단)
경기도 특사경 인권보호수사지침 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법무부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 규칙, 인권보호수사 준칙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인권보호 수사 지침 시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책무 및 피해자 구제절차 강제처분 과정에서 피의자·참고인 기본권침해 최소화 	('20. 1월 예정)	공정국 (민생특별사법 경찰단)
북한이탈주민 제3국 출생자녀 우리말 향상지원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북한이탈주민 제3국 출생자녀에게 우리말 능력 향상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성장·적응에 기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원대상 : 30개월~15세까지의 경기도 거주 북한 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자녀 지원내용 : 연령별, 주기별 맞춤 한글·국어 학습지 지원(月 4만원) 	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(‘20.1월)	평화협력국 (평화기반조성과)

2 복지·보건·여성·교육·노동 분야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긴급복지 지원액 인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생계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인가구 : 441,900원 - 4인가구 : 1,194,900원 ◦ 해산비 : 60만원 ◦ 장제비 : 75만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생계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인가구 : 454,900원 - 4인가구 : 1,230,000원 • 해산비 : 70만원 • 장제비 : 80만원 	긴급복지지원법 (‘20. 1. 1.)	복지국 (복지정책과)
경기도형 긴급복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생계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인가구 : 441,900원 - 4인가구 : 1,194,900원 < 대상자 선정 기준 > ◦ 소득기준 : 중위소득 80% 이하 ◦ 일반재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도시 15,000만원 이하 - 중소도시 9,500만원 이하 ◦ 금융재산 : 500만원 이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생계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인가구 : 454,900원 - 4인가구 : 1,230,000원 < 대상자 선정 기준 : ’19.11.15. 시행 > • 소득기준 : 80% → 90% 이하 • 일반재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지역 : 24,200만원 이하 - 군지역 : 15,200만원 이하 • 금융재산 : 1,000만원 이하 	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(‘20. 1. 1.)	복지국 (복지정책과)
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출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단 운영 (경기복지재단 위탁 추진 ’19.3월~12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단법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출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(12개소→28개소) - 종합재가센터 운영(2개소→7개소) - 사회서비스 민간기관 지원사업 추진(안전점검 등) ⇒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	경기도사회 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(’19. 10.)	복지국 (복지정책과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 공제액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기본재산 공제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도시 : 5,400만원 - 중소도시 : 3,400만원 - 농어촌 : 2,900만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기본재산 공제액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도시 : 6,900만원 (1,500만원 증가) - 중소도시 : 4,200만원 (800만원 증가) - 농어촌 : 3,500만원 (600만원 증가) 	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-605 6('19.11.29) *고시 개정 중 ('20. 1. 1.)	복지국 (복지사업과)
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기준 중위소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인 가구 : 1,707,008원 - 4인 가구 : 4,613,536원 ◦ 생계급여 선정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인 가구 : 512,102원 - 4인 가구 : 1,384,061원 ◦ 의료급여 선정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인 가구 : 682,803원 - 4인 가구 : 1,845,414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기준 중위소득 상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인 가구 : 1,757,194원 (50,186원 증가) - 4인 가구 : 4,749,174원 (135,638원 증가) ●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인 가구 : 527,158원 (15,056원 증가) - 4인 가구 : 1,424,752원 (40,691원 증가) ● 의료급여 선정기준 상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인 가구 : 702,878원 (20,075원 증가) - 4인 가구 : 1,899,670원 (54,256원 증가) 	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73호 ('20. 1. 1.)	복지국 (복지사업과)
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인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해산급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급자 출산 시 1인당 60만원 출산비용 지급 ◦ 장제급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급자 사망 시 1가구당 75만원 장례비용 지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해산급여 : ('19) 60만원 → ('20) 70만원 ● 장제급여 : ('19) 75만원 → ('20) 80만원 	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-605 6('19.11.29) *고시 개정 중 ('20. 1. 1.)	복지국 (복지사업과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참전명예수당	◦ 1인당 年15만원 지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6.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인상 - 1인당 年15만원 → 年24만원으로 9만원 인상 	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(‘16. 12. 16.)	복지국 (복지사업과)
보훈대상자 위문	◦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에게 위문 시기별(명절, 국경일, 기념일별) 위문금 지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5.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지급되는 위문금 지원대상 확대 - 지원대상 범위 : 5.18 부상자 → 5.18 유공자 및 유족 으로 확대 	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(‘18. 11. 13.)	복지국 (복지사업과)
국가유공자 급식 지원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상이군경회 도지부 복지회관 이용 국가유공자에 대해 주 2회 중식 제공 - 복지회관 이용자 대부분 고령에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 자로 상이군경 회원의 건강과 생활안정 도모 	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(‘18. 11. 13.)	복지국 (복지사업과)
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청년 국민연금 조기가입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 - 지원대상 : 경기도 거주 만18세 청년/’20년(157,483명) - 지원내용 : 국민연금 최초 가입 보험료 9만원(임의 가입자 월 최저보험료) 지원 	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 (’19. 6. 18)	복지국 (청년복지정책과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경기도 청년 면접수당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미취업청년의 구직 활동 지원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면접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면접수당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원대상 : 경기도 거주 만18세~34세 이하 미취업청년 - 지원내용 : 면접수당(1인당 1회 35천원, 최대 6회)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	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제12조 ('19. 1. 14.)	복지국 (청년복지정책과)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사업개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사업명)경기도 알하는 청년통장 - (지원규모)2천명 - (지원내용)3년간 6,192천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명 변경, 수혜자 확대 등 제도 개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사업명)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- (지원규모)9천명 - (지원내용)2년간 3,408천원 	경기도 자체계획 ('20. 5월 예정)	복지국 (청년복지정책과)
청년저축계좌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근로능력있는 주거·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의 탈빈곤 촉진 및 자산형성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대상 :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·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(15세~39세) - 지원내용 : 근로소득공제액 10만원 저축 시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 추가 매칭 - 지원시기 : '20. 4월(예정) 	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-4483('19. 9. 11.)	복지국 (청년복지정책과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기초연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기준연금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득하위 20% 이하 어르신 30만원/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준연금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득하위 40% 이하 어르신 30만원/월 	기초연금법 제5조 (‘20. 1월)	복지국 (노인복지과)
노인장기요양 보험 요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강보험료 금액의 8.51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인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강보험료 금액의 10.25% 	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 (‘20. 1. 1.)	복지국 (노인복지과)
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장기요양기관 지정 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설 및 인력기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장기요양기관 지정 기준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설 및 인력기준, 설치운영자의 급여제공이력, 행정처분내용,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계획 등에 대한 적합여부 각 시군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	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31조 (‘19. 12. 12.)	복지국 (노인복지과)
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(공익활동) 참여기간 9개월 ◦ (사회서비스형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참여대상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원칙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공익활동) 참여기간 10 ~ 12개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사업특성 및 시군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• (사회서비스형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참여대상 만65세 이상 ※ 일부 프로그램 유형 만 60세부터 참여가능 	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 (‘20. 1. 1.)	복지국 (노인복지과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노인맞춤 돌봄서비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노인돌봄 관련 6종 사업 각각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본서비스, 종합서비스, 단기가사 서비스,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,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, 지역 사회 자원연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노인돌봄 관련 6종 사업 통합 개편·확대 「노인맞춤 돌봄 서비스」 사업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원대상 :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, 차상위,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는 어르신 (서비스대상자 : 40,025명 → 62,217명 수행기관 인력 41개소 1,677명 → 113개소 3,849명) - 서비스내용 : 방문 및 통원 프로그램 등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- 서비스절차 : 읍·면·동 신청, 수행기관 서비스 제공 	노인복지법 제27조의2 ('20. 1. 1.)	복지국 (노인복지과)
주거급여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주거급여 선정기준(기준 중위소득 44% 이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인가구 751,084원, 4인가구 2,029,956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거급여 선정기준(기준 중위소득 45% 이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인가구 790,737원, 4인가구 2,137,128원 *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('18.10월~) 	국토교통부고시 제2019-427호 ('20. 1. 1.)	도시주택실 (주택정책과)
보건소 연명의료등록사업 지원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전연명의료 등록사업 활성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명의료등록사업 신청 보건소 전담인력 인건비 및 홍보비 지원 - 사업량 : 13개 보건소 (부천3개, 광명, 군포, 의왕, 과천, 고양3개, 의정부, 구리, 포천) 	연명의료결정법 제5조 및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('19. 1. 1.)	보건건강국 (보건의료정책과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민간의료기관 수술실CCTV설치 지원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도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CCTV 설치비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소당 설치비용 도비 30,000천원 지원 (추가비용 의료기관 자부담) - 지원희망 기관 소요조사 실시 후 시범 설치운영 	의료법 제83조,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,제25조, 지방재정법제17조 (‘19. 1. 1.)	보건건강국 (보건의료정책과)
경기도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검사 사업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유아 이용 집단시설 신규 채용 종사자 잠복결핵검사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상 : 도내 산후조리원, 어린이집, 아동복지시설 신규 채용 종사자 - 내용 : 잠복결핵검사, 감염자 치료 연계 및 부작용 모니터링 	결핵예방법 제27조 (‘20. 2. 예정)	보건건강국 (감염병관리과)
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상 : A형간염 면역력이 없는 고위험군 만 20세~49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고위험군은 만성간질환자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대상자 선정 예정 - 내용 : 예방접종 2회 무료지원, 항체검사비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 시 무료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만 20세~39세는 항체검사 없이 바로 접종 만 40세 이상은 항체검사 후 항체 음성자만 접종 - 시행 :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	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(‘20. 1. 1.)	보건건강국 (감염병관리과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2019-2020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플루엔자 3가 백신 지원 - 생후 6개월~12세 어린이, 만 65세 이상 어르신, 임신부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20-2021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지원 - 생후 6개월~12세 어린이, 만 65세 이상 어르신, 임신부, 중학교 1학년 지원 	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('20. 9. 1.)	보건건강국 (감염병관리과)
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지역 내 건강격차 해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지역 건강문제와 건강격차 해결 -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영역 선정과 보건분야 국정 아젠다와 연계 - 지역 주도형 건강격차 원인규명과 해소를 위한 시범 사업 추진 	보건의료기본법 제 41조 ('20. 1. 1.)	보건건강국 (건강증진과)
구강보건 공공인프라 구축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구강보건실을 구강보건센터로 확대·전환하여 인적, 물적 토대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주민 구강건강 향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대상 : 양주시 - 사업량 : 1개소(양주시 구강보건센터 설치) 	구강보건법 제 17조의 2	보건건강국 (건강증진과)
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응급입원기간(최대 72시간) 동안의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(약 400천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응급입원 치료비 단가변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응급입원기간(최대 72시간) 동안의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(약 100천원) •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행정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최대1,000천원 - 정신질환 외래치료비 본인부담금(월 최대 30천원) 	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11조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	보건건강국 (건강증진과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식품위생감시원 의무직무교육 실시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20년도부터 식품위생감시원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직무교육을 의무로 이수하여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매년 7시간 ※ 직무수행 경력이 1년 미만자 : 21시간 이상 	식품위생법 제17조의 2 ('20. 1월)	보건건강국 (식품안전과)
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기도 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17~2019 : 823개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20년도 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 목표 설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,500개소(음식점위생등급제 대상업소의 1.5%) 「경기도 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구역」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속도로 휴게소, 쇼핑몰 등 위생등급 구역 우선지정 추진 	식품위생법 제47조의 2 ('15. 5. 18.)	보건건강국 (식품안전과)
식중독 예방·관리 사업 강화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20년 경기도 식중독 예방사업 시군 평가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식중독 발생 저감을 위한 시군 참여도 제고 우수시군 표창 및 시상금 지원(총 7개 시군) 	식품위생법 제86조, 제89조 및 자체계획 ('20. 1월)	보건건강국 (식품안전과)
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성검사 강화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공식품 중 유해항목 검사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캔디류 중 총산(구연산으로서) 규격 신설 특수용도식품 중 곰팡이독소 규격 강화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는 제품의 기준 규격신설 영유아용 이유식에 대한 식품유형 신설 기타식품 중 무기비소 규격 신설 	식품위생법제7조 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-98호) ('20. 1. 1.)	보건환경연구원 (식품의약품연구부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위생용품관리 대상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문신용 염료 -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(법률 제15511호)에 따라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 제품으로 관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위생용품의 종류에 문신용 염료 추가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지정하고,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	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-170호 ('20. 1. 1.)	보건환경연구원 (식품의약품연구부)
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및 일회용 면봉의 메탄올, 포름알데히드 규격 미설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위생용품의 이물질 정의 신설 및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위생용품의 이물질 정의 신설,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및 일회용 면봉의 메탄올, 포름알데히드 규격 신설 등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선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위생용품 제공 	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-115호 ('19 11. 28.)	보건환경연구원 (식품의약품연구부)
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도입에 따른 세부 운영기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제 시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인의 피부타입, 선호도 등을 반영해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제품을 혼합·소분한 제품 판매업 신고제 시행 	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-384호 ('20. 3. 14.)	보건환경연구원 (식품의약품연구부)
화장품 안전기준 및 표시광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의무 부과하고 화장품 소비자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근거 마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화장품 성분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경우 그 성분 표시 시행 - 영유아용 제품류(만3세 이하)와 어린이용제품(만13세 이하) 특정 제품에는 보존제의 함량 표시 시행 	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-170호 ('20. 1. 1.)	보건환경연구원 (식품의약품연구부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누리과정 보육료 인상	◦ 누리과정 보육료 22만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누리과정 보육료 24만원 -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단가 2만원 인상 	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(‘20. 예정)	여성가족국 (보육정책과)
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단가인상	◦ 급간식비 1,745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급간식비 단가 1,900원 - 영유아의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해 155원 증액 	영유아보육법 (‘20. 예정)	여성가족국 (보육정책과)
보육지원체계 개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종일반 운영(07:30~19:30) - 맞춤형 운영(09:00~15:00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본보육(09:00~16:00)+연장보육(16:00~19:30) - 07:30~09:00는 순차적 등원이 이루어지는 등원지도 시간 - 맞춤형 폐지 •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연장 보육료 지원 - 연장 보육료는 시간당 1~3천원으로 17:00 이후 이용시간 일 30분 단위로 지원 	영유아보육법 (‘20.3월 시행)	여성가족국 (보육정책과)
영유아 인성교육 콘텐츠 개발 등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·공간 제약 없는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공을 통한 교육현장(어린이집, 가정) 중심의 도내 영유아 인성교육 확산 추진 - 콘텐츠 개발 스토리 공모전 및 콘텐츠 개발 (10편) 보급, 부모와 영유아 지도서 제작 	경기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 제4조 (‘16. 2. 24.)	여성가족국 (북부여성가족과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경기도 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지원대상 : 도내 소재 중학교 신입생 * 학생수 : 127천명(중1) ◦ 지원방법 : 현물지원 (학교주관구매제도) ◦ 지원단가 : 30만원 내외(1인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지원대상 : 도내 소재 중·고등학교 신입생 ('20년부터 도내 고등학교 지원) * 학생수 : 259천명(중1, 고1) ● 지원방법 및 단가 : '19년과 동일 ● 사 업 비 : 777억원 * 도 194억(25%), 시군 194억(25%), 교육청 389억(50%) 	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 ('19. 6.13.)	평생교육국 (교육협력과)
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지원대상 : 도내 거주자로 대안교육기관 중학교 신입생, 타 시도 중학교 신입생 * 학생수 : 1,786명(중1) ◦ 지원방법 : 현금지원 (구입 영수증) ◦ 지원단가 : 30만원 이내(1인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지원대상 : 도내 거주자로 대안교육기관 중·고 신입생, 타 시도 중학교 신입생 ('20년부터 대안교육기관 고등학생 지원) * 학생수 : 2,180명(중1, 고1) ● 지원방법 및 지원단가 : '19년과 동일 ● 사 업 비 : 654백만원(도 50%, 시군 50%) 	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('19. 8. 6.)	평생교육국 (교육협력과)
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- 지원대상 : 118개소/8,203명 - 소 요 액 : 7,635백만원(도비30%, 시군비70%) - 지 원 액 : 급식비(평균 4,654원/1인·1식) ※ 경기도 교육청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단가 적용 	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('20년 1학기부터)	평생교육국 (청소년과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초등학교 · 중학교 무상교육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0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상학교 : 초·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·고등기술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※ 제외학교 : 입학금·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시행과정 : '20년 2·3학년, '21년부터 전학년 지원항목 :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, 교과서비 재원부담 : 국가(47.5%) : 교육청(47.5%) : 지자체(5%) 	초·중등교육법 제10조,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 ('20.1.1.예정)	평생교육국 (교육협력과)
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등 지원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기도형 청소년쉼터 지원사업 추진(도비 100%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요액 : 480백만원(개소당 15,000천원/32개소) 지원내용 : 아웃리치 홍보물품 구입, 자립훈련 교육비, 급식비, 피복비 등 	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 ('20. 1. 1.)	평생교육국 (청소년과)
학교폭력 대책지역위원회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개최 (연중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의 (17회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학교폭력 재심기능 교육청 이관(2020. 3. 1. 시행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0. 2. 29.일 이전 학교자치위원회 학교폭력 결정통보서에 대해서만 재심(5회) ※ 학교폭력예방법 개정('19.08.02) 	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 ('20. 3. 1.)	평생교육국 (청소년과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경기도 온라인 부모학습 및 평생학습 포털 구축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온라인 부모학습 전용페이지 개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모역할을 배울 수 없는 사회적 환경을 고려해 자녀생애 단계별 부모학습 전용서비스 개발 추진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(통합서비스) 구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내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정보채널 일원화 및 관리 기능 개발 등 	평생교육법 제5조 ('19.10.24.)	평생교육국 (평생교육과)
경기도 생활임금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19년 생활임금 : 10,000원(월 209만원) 적용대상 : 道 및 공공기관 직접 고용 노동자, 道 간접고용(민간 위탁, 용역) 노동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0년 생활임금 : 10,364원(월 217만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3.64% 인상 적용대상 : 동일 	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('14. 7. 11.)	노동국 (노동정책과)
경기도 비정규직 휴가지원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비정규직·특수고용노동자 등 휴가여건이 열악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휴가비 지원을 통해 일·가정 양립 문화 확산 및 관광활동 촉진 노동자(15만원)와 경기도(25만원)가 함께 적립금 조성(40만원)하고, 이를 사용해 여가상품 구매 및 이용 	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('12. 1. 05.)	노동국 (노동정책과)
경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지원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이동노동자쉼터 개소('20.1~3월중) : 수원, 성남, 광주, 하남 이용대상 : 대리운전기사, 쿼서비스 등 이동노동자 주요기능 : 휴게공간 및 법률·건강 상담, 여가생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	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('19. 4. 29)	노동국 (노동정책과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대학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표적인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대학교 현장노동자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 요구 증대에 따라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진 • 설치지역 : 도내 61개 대학교 중 10개소 지원(공모선정) • 지원내용 : 물품(에어컨, 정수기 등), 인테리어 비용 지원 	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(‘16.7.19)	노동국 (노동정책과)
주52시간 정착을 위한 노사가 함께하는 워라벨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퇴근 후 노동자 여가 활동 보장을 위한 취미, 문화, 예술 등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- 대상 : 도내 소기업(30개소) - 지원금액 : 500만원 이내(자부담 10%) - 내용 : 노사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 선정 	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(‘16.7.19)	노동국 (노동정책과)
지역순회 노동권익 강좌 운영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·법률 강좌 개설 - 횟수 :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시군별 시행(12회) - 대상 : 도민(주민자치센터, 여성회관, 시민대학 인문 강좌 수강생)과 취약계층노동자 등 - 내용 : 근로기준법, 임금, 산업재해 등 	경기도 노동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(‘19. 10. 1.)	노동국 (노동권익과)
노동자 역량 강화 교육 확대	◦ 예비취업자, 노사관계자, 예비 직장인, 청년·청소년 노동법률 교육 실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노동자, 사용자, 청소년, 대학생으로 구분하여 대상별 맞춤형 노동교육 실시 - 노동자 : 비정규직,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- 사용자 : 프랜차이즈, 서비스분야 사업주 - 청소년(대안학교)·대학생 대상 노동인권 교육 	경기도 노동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(‘19. 10. 1.)	노동국 (노동권익과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체험 및 교육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산업재해에 취약한 현장 대상 산업안전 VR(가상 현실) 체험(100회) - 중소기업 사업장 대상 안전보건교육 개선, 사업장내 안전조치 강화 및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사항 등 교육 (1,000회) 	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 조례 ('16. 9. 29.)	노동국 (노동권익과)
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감정노동자, 해고노동자, 직장내 괴롭힘 등 취약계층 노동권익 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한 단계별 치유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감정노동자 등 권리보장 교육, 심리치유, 권리구제 지원 -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단계별 지원 ※ 상담(운영기관) → 심층상담(센터) → 치료(협력병원) 	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('18. 3. 20.)	노동국 (노동권익과)
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관련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사업장을 선정하여 인센티브 제공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25개 업체 선정 - 인증서 및 현판 교부(인증기간 3년) - 근로환경개선자금 지원 	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 조례 ('16. 9. 29.)	노동국 (노동권익과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경기도 통역 서포터즈 운영	< 신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통역 서포터즈가 현장(공공기관·병원 등)에 방문하여 외국인주민의 통역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선발인원 : 35명 - 선발대상 : 합법적인 한국체류기간 2년 이상 결혼 이민자 등 - 자격요건 : 한국어능력시험 4급 또는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수자 등 - 근무시간 : 주 10 ~ 40시간(수요에 맞게 조정) 	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6조 ('19. 7. 1.)	노동국 (외국인정책과)

3 산업·경제, 농어업·축산·산림 분야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일자리우수기업 인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환경개선 사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근로자 복지시설 신설 및 개선 ※ 기업지원금 : 3천만원(업체당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환경개선 사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업지원금 상향(3천만원 ⇒ 4천만원) 	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(‘12. 11. 6.)	경제실 (일자리경제정책과)
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소상공인 매출증대,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지역화폐 발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군 발행 및 해당 지역 내 사용 (카드, 지류, 모바일 등 형태) - 발행범위 : 일반발행 + 정책발행 (청년배당, 산후조리비) ● 이용방법 및 혜택 (https://www.gg.go.kr/gg_localcurrency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비자 이용 : 지정구매처에서 할인가매 (최대 6%), 소득공제(30%) 가능 - 가맹점 등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카드형 : 요건충족시 자동등록 지류 및 모바일 : 가맹점등록 필요 - 제외대상 : 백화점, 쇼핑센터, 대형마트, SSM, 유흥업소 및 연매출 10억원 초과 상점은 제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발행범위 대상명 변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책발행(청년기본소득, 산후조리비 등) ● 홈페이지 변경 (http://www.gmoney.or.kr/) 	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(‘19. 11. 12.)	경제실 (소상공인과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외국인투자 현금지원한도 상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소재부품분야 제조업 : 현금지원한도 30% 이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재부품장비분야 제조업 : 현금지원한도 40% 이내 	<p>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(‘19.11.29)</p>	<p>경제실 (투자진흥과)</p>
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자격을 국민 경제기여도 추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단지형 외투자지역 입주자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투자분 30%이상 - 외투자금액 1억원이상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단지형 외투자지역 입주자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좌동 - 좌동 - (추가)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경우일 것 	<p>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(‘19. 12. 10.)</p>	<p>경제실 (투자진흥과)</p>
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일정규모 이상 기업 입주 시 선정 심의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단지형 외투자지역 입주 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리기관(시·도지사)은 프로젝트 매니저의 검토 후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입주여부 결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단지형 외투자지역 입주 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좌동 - (추가) 입주희망기업이 개별형 외투자지역 지정 기준(예: 제조업 3천만불 등) 이상이거나 입주면적이 4만㎡이상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후 입주여부 결정 	<p>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(‘19. 12. 10.)</p>	<p>경제실 (투자진흥과)</p>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신청자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전업적 여성농업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청자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기도 내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전업적 여성 농업인(읍·면 → 동 지역 포함 경기도 전역 확대) 	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3조 (’20. 1. 1.)	농정해양국 (농업정책과)
벼 우수품종 공급지원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지원품종 : 추청, 고시히카리, 삼광, 대안, 맛드림 ◦ 지원단가(포/20kg) : 6,320원/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품종 : 추청, 고시히카리, 삼광, 대안, 맛드림, 참드림, 유기추청 • 지원단가(포/20kg) : 품종별 보조금 차등지원 (2019년산 종자공급가 확정시 결정) 	벼 우수품종 공급지원사업 시행지침 (’20. 1. 1.)	농정해양국 (친환경농업과)
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시범사업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임신부터 출산 이유기까지,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 공급 • 사업대상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임신확인서,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• 지원한도 : 1인당 연 48만원(자부담 9.6만원) 	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 (’20. 1. 1.)	농정해양국 (친환경농업과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친환경농업 인증농가·사업자 의무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(의무교육 규정 없음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모든 인증사업자 의무교육(농가, 취급자 등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기·무농약·무항생제 등 친환경 농·축산물 인증(신규, 인증갱신)을 받으려는 사람 * 2년 1회(신규 3시간, 갱신 2시간 이상) 	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’20.1.1.)	농정해양국 (친환경농업과)
공익형 직불제 도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쌀 고정·변동, 밭, 조건불리, 경관보전, 친환경직불 등 개별 직불금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쌀 고정·변동, 밭농업 등 직불제 사업을 ‘공익기능증진 직불’로 통합·편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쌀·밭·조건불리 직불을 ‘기본형 공익직불’로 통합 (쌀 변동직불금은 폐지/’19년산까지 유지) - 친환경직불, 경관보전직불은 ‘선택형 공익직불’로 유지 	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(’20.3.1.예정)	농정해양국 (친환경농업과)
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여성·노약자 우선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보조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우선 지원대상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여성·고령 농업인, 장애농업인, 귀농인, 청년창업농(만 15세 ~ 40세) • 지원한도액 조정(지원한도액의 50% 보조지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승용관리기·소형트랙터 10백만원 - 보행관리기 3백만원 * 한도초과 구입비용은 자부담 	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 (’20.1.1.)	농정해양국 (친환경농업과)
내수면 무동력 어선 전기추진기 보급사업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추진목적 : 내수면 무동력 어선에 전기추진기를 설치해 친환경적인 조업 유도 및 안정적인 조업 기반마련 • 사업대상 : 북한강 일원 무동력어선 어업인 • 지원내용 : 전기추진기 9대 	내수면어업법 제17조 (’20. 1. 1.)	농정해양국 (해양수산과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불법어업에 대한 과징금 제도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행정처분시 과징금 갈음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어선위치 미보고 및 거짓위치 보고 - 어획물 조사시 거부·방해 또는 기피 행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징금이 행정처분(어업정지)를 대신할 수 없도록 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어선위치 미보고 및 거짓 위치보고 -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(어획물 등의 조사)에 따른 어획물 등의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	수산업법 시행령 제79조 ('20. 1. 1.)	농정해양국 (해양수산과)
영농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사업대상(조건불리)지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서(섬)지역 * 경기도 : 풍도, 육도, 제부도, 국화도, 입파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대상(조건불리)지역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서(섬) 및 접경지역 * 경기도 : 풍도, 육도, 제부도, 국화도, 입파도, 김포시 * 「접경지역특별법」에서 정하는 해상 북방한계선 인접지역 조건불리지역 포함 	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 ('20. 1. 1.)	농정해양국 (해양수산과)
청년어촌정착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사업대상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대상) 만 40세 미만 어업 경력(독립경영) 3년 이하의 귀어업인(예정자 포함), 후계 어업경영인 ◦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 < 신 규 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대상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대상)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(독립경영) 3년 이하의 귀어업인(예정자 포함), 후계어업경영인, <u>현지 거주 청년어업인, 어업창업예정자</u> •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u>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어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「농어업경영체법」 제2조 제5호의 어업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각각 사업대상자 선정 가능</u> 	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 ('20. 1. 1.)	농정해양국 (해양수산과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축산계열화사업 등록제 시행 및 미등록 영업행위 금지 등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제 도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회사법인으로서 고정사업장을 갖춘 자로 관할 사도에 등록 - 휴폐업 및 휴업 후 영업재개 등 변경 시 변경신고 의무 - 계열화사업자의 등록취소, 영업금지, 과징금 및 벌칙 등 • 계열화사업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원칙 규정 	축산계열화법 제5조의 2~7, 제35~37조 (‘20. 1. 16., ‘20. 7. 16.)	축산산림국 (축산정책과)
축산계열화사업 계약서 명시사항 및 준수사항, 분쟁조정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계약서 명시사항(4가지) ◦ 계열화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 ◦ 분쟁조정위원회 구성(위원장 포함 9명) 및 분쟁조정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계약서 명시사항 상세화(4가지 → 15가지) • 계열화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 종합적·포괄적 규정 • 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신설 • 분쟁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인 및 비전문가 배제, 정원 축소(9명→7명) 및 임기연장(2년→3년), 분쟁조정 절차 상세화 등 	가축계열화법 제7~9조, 제14조, 제19조, 제25~ 28조, 제34조의 2 (‘20. 1. 16.)	축산산림국 (축산정책과)
축산계열화사업자 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농가제공 의무 등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계열화사업자의 사업현황, 계약조건, 농가의 예상수익 등 정보를 사도에 등록하고, 변경시 변경등록 또는 신고의무 • 정보공개서를 농가와 계약전에 제공하고, 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약 금지 등 	축산계열화법 제9조의 2~6 (‘20. 7. 16.)	축산산림국 (축산정책과)
축산계열화사업자 판매가격 보고 및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공포 등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계열화사업자에게 축산물 가격의 보고·공개의무 부여 •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및 결과 공포 규정 신설 	축산계열화법 제32조의 2~3 (‘20. 1. 16.)	축산산림국 (축산정책과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축산계열화사업자 등급평가제 도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계열화사업자 중 계약농가와와의 상호협력 등에 모범적인 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농림축산식품부 모범사업자 지정제 폐지 계열화사업자의 사업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등급평가공개 	축산계열화법 제10조 ('20. 1. 16.)	축산산림국 (축산정책과)
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축종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원축종 : 한우, 양돈, 양계(육계, 산란계, 종계), 낙농(젖소, 육우), 오리, 사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원축종 : 한우, 양돈, 양계(육계, 산란계, 종계), 낙농(젖소, 육우), 오리, 사슴, 곤충(갈색거저리유충, 흰점박이꽃무지유충, 누에), 양봉 * 곤충은 50평이상의 사육실을 보유하고 사육, 가공전처리 장비를 일괄도입하는 농가에 한함 * 양봉은 200군 이상 농가에 한하며 양봉산업법이 시행('20.8.28.) 후 지원 	농림사업시행지침 ('20. 1. 1.)	축산산림국 (축산정책과)
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불성실 사업대상자 제재 강화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불가피한 사유*없이 1개월이내 업체탐색, 견적서 접수, 계약을 위한 실시설계 등을 하지 않거나 선정 후 2개월 이내 계약**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자 재선정 * 자연재해, 가축질병 발생, 신축축사 인허가 ** 5천만원 초과 물품 및 용역구매, 2억원 초과 시설공사 계약 시 3개월 	농림사업시행지침 ('20. 1. 1.)	축산산림국 (축산정책과)
퇴비 부숙도 기준 적용 의무화 시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퇴비화 부숙도 기준 미적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퇴비화 부숙도(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)기준 적용 의무화 - 모든 가축 부숙도(씩혀서 익히는 정도) 기준 준수 	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('20. 3. 25.)	축산산림국 (축산정책과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경기도 사회공익승마사업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대상 : 도내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 • 사업내용 : 심리치료, 심신수양 및 재활치료 등을 위해 승마교감 프로그램 및 승마체험비용 지원 	경기도 말산업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(‘19.1.14.)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자원 조례 (‘16.6.7.)	축산산림국 (축산정책과)
초지에서의 행위제한 및 용도변경 절차 신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초지에서의 행위제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한내용 : 인공구조물 설치, 분묘설치, 토석채취 및 반출 <u>그 밖에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</u> ※ 농림축산식품부령 : 해당조문 없음 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초지에서의 행위제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한내용 : 인공구조물 설치, 분묘설치, 토석채취 및 반출 <u>그 밖에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</u> ※ 시장군수 : 조례제정 필요 • 초지의 용도변경 절차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초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	초지법 제21조의2 (‘20. 6. 11.) 초지법 제23조의3 (‘20. 6. 11.)	축산산림국 (축산정책과)
양봉농가의 등록의무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양봉농가의 등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시장·군수에 등록 ※ 등록방법은 시행령, 시행규칙 제정후 공포예정 	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‘20. 8. 28.)	축산산림국 (축산정책과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요건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닭·오리 등 가금류 사육시설 중 집란 또는 보관 시설의 일부를 이용하여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하려는 경우 그 영업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도록 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받으려는 건물은 닭·오리 등 가금류 사육 시설과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규정함 	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('20. 4. 25.)	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
가금 및 가금산물의 이력관리 시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소·돼지(수입축산물 포함) 이력제 시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닭·오리·계란 이력제 추가 시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육부터 판매까지 체계적 이력관리 -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닭,오리,씨알의 이동금지 - 계란에 이력번호 표시(가정용 유통·판매 계란) 	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('20. 1. 1.시행)	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
살처분 매몰비 국비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살처분, 소각·매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방자치단체가 지원, 다만 제1종 가축전염병중 구제역,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다음의 경우 국가가 일부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당 시군 사육 가축전부에 대해 살처분하는 경우 - 해당 가축사육두수의 100분의 1이상 사육시군에서 그 사육두수의 100분의 50이상 살처분 	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('19. 12. 10.)	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
생계안정비용 지원 상한액 조정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신 규 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생계안정비용은 전국 축산농가의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을 상한액으로 하나, 가축전염병의 종류, 가축 소유자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한액을 상향 조정할수 있도록 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세부사항은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	가축전염병예방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('19. 12. 10.)	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기관 지정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밀검사를 검역본부 및 지정된 시도 정밀진단기관에서 실시하도록하고 시도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방안 마련 	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제9조 (‘19. 12. 4.)	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
구제역 백신 항체검사 확인검사 생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구제역 항체검사시 확인검사 시료 채취기준두수 이상으로 검사한 경우 확인검사를 생략할수 있다(임의 규정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구제역 시료채취기준에 따른 검사두수 이상으로 실시한 경우 추가적인 확인검사를 생략토록 개선 - 강행규정으로 개선하여 행정조치 강화 	구제역 예방접종 ·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4조 (‘20. 1. 1.)	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
동물등록제도 기준 월령 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(기준 월령: 3개월 이상) - 주택·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등록대상동물의 범위(기준 월령: 2개월 이상) - 대상동물 기준은 이전과 동일 	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(‘20. 3. 21.)	축산산림국 (동물보호과)
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체험·교육·시험·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(사체 포함) 해부실습을 하게 하여서는 안됨 - 다만,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 제외 	동물보호법 제24조의2 (‘20. 3. 21.)	축산산림국 (동물보호과)
경기도 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읍면지역의 마당에서 기르는 5개월 이상 된 개(암컷)에 대하여 중성화수술 지원 - 중·대형 혼종(믹스)견 우선적으로 중점 지원 ※ 참여시군 : 용인, 화성, 남양주, 평택, 광주, 이천, 안성, 포천, 연천 	동물보호법 제4조 (‘20. 1. 1.)	축산산림국 (동물보호과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경기도 유기동물 입시보호제 운영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유기동물에게 일정기간 동안 자원봉사자의 가정(家) 안에서 살뜰히 보호될 수 있도록 입시보호제도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道 도우미견나눔센터, 시군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시보호자에게 입시보호 물품과 의료서비스 지원 ※ 참여시군 : 용인, 고양, 양평, 수원 	동물보호법 제4조 (‘20. 1. 1.) 2020년 유실·유기동물 입시보호 운영 계획	축산산림국 (동물보호과)
경기도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내장형 칩으로 동물등록 의무를 이행한 도민에게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가입대상 : 사업참여 시군에 거주지를 둔 반려견 - 가입절차 :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- 보험혜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반려견 상해 치료비 지원 · 개 물림 사고로 인한 대인·대물 손해 배상 등 ※ 참여시군 : 수원, 성남, 남양주, 과천, 동두천 	동물보호법 제4조 (‘20. 1. 1.) 경기도 동물보호조례(안) 제7조	축산산림국 (동물보호과)
경기도 유기동물 입양카페 운영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카페형 유기동물 입양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동물보호소가 아닌 도심카페에서 유기동물 입양 지원 	동물보호법 제4조 (‘20. 1. 1.)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제11조	축산산림국 (동물보호과)
경기도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 운영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재건축·재개발 등의 도심 정비구역에 서식하는 길고양이에 대한 서식지 이주 지원 등 지역단위 중성화(TNR)사업 지원 	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(‘20. 1. 1.)	축산산림국 (동물보호과)
동물복지농장 컨설팅 지원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요 축종별 신규 참여 희망농가 및 기 인증 농가 대상으로 농장질병 및 사양관리 전략 등 컨설팅 지원 	동물보호법 제4조, 제29조 (‘20. 1. 1.)	축산산림국 (동물보호과)

4 환경, 도시·교통·건설 분야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비산먼지 신고 사업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도권지역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에 노후건설기계 사용 제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06년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, 콘크리트펌프, 콘크리트믹서트럭 - '05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, 굴착기 	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시행규칙제58조제4항별표14 ('20. 1. 1.)	환경국 (미세먼지대책과)
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반 및 저소득층 보조금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원금액 : 보일러 1대당 20만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저소득층 지원금액 상향 (20만원 → 50만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원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가정용저녹스보일러 '20.4.3.부터 설치 의무화 (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제품 보일러) 	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('20.4.3.)	환경국 (미세먼지대책과)
정밀검사지역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기도 16개 시(수원·성남·고양·부천·안양·안산·용인·의정부·남양주·광명·시흥·군포·구리·하남·의왕·과천시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.1.1.부터 : 17개 시로 확대(화성시 추가) - 20.4.3.부터 : 28개 시로 확대(평택·파주·김포·광주·오산·양주·이천·안성·포천·여주·동두천시 추가) 	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 (20.1.1.)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제1항 ('20.4.3.)	환경국 (미세먼지대책과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2월~3월, 수도권(우선시행) 5등급 차량 운행제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행시기 : 미정(법령 개정 중) - 단속시간 : 06시 ~ 21시(주말, 공휴일 제외) - 제외 : 긴급차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차, 외 교관차, SOFA차, 저감장치 부착차 등 - 유예 : 배출가스 5등급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, 저 감장치 미개발, 장착불가, 영업용, 화물차 등 - 벌칙 : 과태료 10만원(1일 1회) 	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(개정중)	환경국 (미세먼지대책과)
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배출시설 확대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 지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.5MW이상 섬 발전시설, 동물화장시설 등 • 10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평균30%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먼지 10~70mg/Sm³ → 5~50mg/Sm³ • 특정대기유해물질(8종) 배출기준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ppm, 클로로포름 5ppm 등 	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 별표8, 별표8의2 (‘20. 1. 1.)	환경국 (환경안전관리과)
대기환경 규제지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천계획의 수립·시행 - 목표달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 - 지정 해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삭 제 	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(‘20. 4. 3.)	환경국 (환경안전관리과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휘발성 유기화합물 규제지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기존 설치 의무 지역(17개 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기환경규제지역(15개 시) -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 지역(2개 시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기관리권역(28개 시)으로 확대·전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1개 시 추가(김포시, 오산시, 평택시, 파주시, 동두천시, 양주시, 이천시, 광주시, 안성시, 여주시, 포천시) •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조기 설치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보조율) 연간판매량 1,000㎥ 미만(50%) 연간판매량 1,000㎥ ~2,000㎥미만(40%) 	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(‘20. 4. 3.)	환경국 (환경안전관리과)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특별법 시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(폐지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기관리권역 확대(수도권→전국) • 대기관리권역 내 배출허용총량제 실시, TMS 부칙의무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기 1~3종 사업장 • 배출부과금 특례 축소(예정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본부과금만 면제(초과부과금은 부과) • 배출허용기준 특례 축소(예정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종사업장만 130%까지 농도완화 (1,2종 사업장은 미적용) 	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관한 특별법 (‘20. 4. 3.)	환경국 (환경안전관리과)
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, 의료폐기물에서 제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의료폐기물 제외 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되는 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기저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의료폐기물 제외 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요양병원, 종합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기저귀 	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(‘19. 10. 29.)	환경국 (자원순환과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부적정처리 폐기물의 처리책임자 범위 확대	◦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 책임자 - 처리자, 위탁자, 토지소유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배출·운반·최종처리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되고, 법령 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를 처리 책임자로 규정 - 「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, 수집·운반, 보관,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」 등 	폐기물관리법 제48조 (‘20.5.27.)	환경국 (자원순환과)
폐기물 부적정처리 징벌적 과징금 제도 신설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부당이득액 환수를 위한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제도 신설 - 폐기물 부적정처리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 	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5 (‘20.5.27.)	환경국 (자원순환과)
굴뚝 TMS정보 실시간 공개	◦ 굴뚝자동측정기기의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(한국환경공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굴뚝자동측정기기의 결과를 실시간 공개(한국환경공단) 	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(‘20. 4. 3.)	광역환경관리 사업소
대기오염측정망 운영	◦ 대기오염측정망 운영(118개소) - 도시대기측정망 97개소 - 도로변측정망 10개소 - 중금속측정망 7개소 - 성분측정소 4개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측정망 확대 운영 (118개소 → 131개소) - 도시대기측정소 확대(97개소 → 107개소) - 도로변측정소 확대(10개소 → 13개소) - 중금속측정망 7개소, 성분측정소 4개소 동일 	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계획 (2016~2020)	보건환경연구원 (대기연구부)
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신설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벤조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기준 신설 - 벤조(a)피렌(0.05mg/Sm³), 아크릴로니트릴(3ppm), 1,2-디클로로에탄(12ppm), 클로로포름(5ppm), 스틸렌(23ppm), 테트라클로로에틸렌(10ppm), 에틸벤젠(23ppm), 사염화탄소(3ppm) 	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(2020.1.1.)	보건환경연구원 (대기연구부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실내공기질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취약계층이용시설 시설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4개 시설군) 의료기관, 산후조리원, 노인요양시설, 어린이집 ◦ 대중교통차량(도시철도, 철도, 시외버스) 측정항목 권고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미세먼지(PM₁₀), 이산화탄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취약계층이용시설 시설군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신설)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(430㎡이상) - (5개 시설군) 의료기관, 산후조리원, 노인요양시설, 어린이집, <u>실내 어린이 놀이시설</u> • 대중교통차량 측정 항목 변경 및 권고기준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변경) 미세먼지(PM₁₀) → 초미세먼지(PM_{2.5}) - (초미세먼지) 50μg/m³(차종 구분 없음) 	<p>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(2020.4.3.)</p> <p>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(2020.4.3.)</p>	<p>보건환경연구원 (대기연구부)</p>
사업장 폐수 검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COD(모든 폐수배출시설) - 생태독성 (폐수배출시설 35개 업종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화학적산소요구량(COD)을 총유기탄소량(TOC)으로 전환 ※ 시행일: 신규시설 '20년 시행, 기존 폐수배출시설 '22년, 기존 폐수공공처리시설 '21년 - 생태독성 35개 → 82개 전업종 배출시설로 확대 ('21.1.1. 시행) 	<p>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 (2020.1.1.) (2021.1.1.)</p>	<p>보건환경연구원 (물환경연구부)</p>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하수 수질검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질오염물질 방류수수질기준 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COD(공공하수처리시설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화학적산소요구량(COD)을 총유기탄소량(TOC)으로 전환 ※ 시행일: 신규시설 '20년 시행,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'21년 	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(2020.1.1.) (2021.1.1.)	보건환경연구원 (물환경연구부)
부동산가격 담합 및 허위매물 처벌 강화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동산가격 담합 행위 및 공인중개사 업무 방해에 대한 처분 조항 신설(시행 '20. 2. 21.)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당한 표시·광고 행위에 대한 처분 조항 신설(시행 '20. 8. 21.) 	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('20. 8. 21.) 같은 법 제33조 ('20. 2. 21.)	도시주택실 (토지정보과)
부동산 거래신고 의무규정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동산 거래계약 60일 이내 거래신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기한 단축(60일→30일) 부동산 거래신고 후, 거래계약이 해제,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 실제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거짓으로 계약한 것으로 신고할 경우 처벌규정 신설 	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3조의2 ('20. 2. 21.)	도시주택실 (토지정보과)
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초생활수급자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원대상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: 1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·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비 지원 (최대 30만원) 	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 ('20. 1. 1.)	도시주택실 (토지정보과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경기 한옥건축 지원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한옥 건축촉진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한옥 공사비 지원 - 지원대상 시·군 : 한옥지원 조례가 제정 및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 시·군 ※지원금액은 각 지자체 조례에 의하여 차이가 있음 ※'20년 신규사업 	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	도시주택실 (건축디자인과)
길 찾기 쉬운 안내체계 디자인 개선사업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모두가 불편 없이 원하는 목적지에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통합적인 안내체계 정비 - '길 찾기' 기능 강화를 위해 신속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교통 거점지, 상점가 등의 안내체계 개선 - 공공 공간, 시설물, 안내사인 등 통합적인 디자인개선을 통해 도민, 외국인 모두 편리하고 쾌적한 정보 제공 ※'20년 신규사업 	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0조	도시주택실 (건축디자인과)
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운영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대상 :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, 상가,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 • 지원신청 : 관리인, 구분소유자(점유자) ☞ 10분의 이상동의 • 지원시기 : 2020년 2월부터(예정) • 지원내용 : 법률, 회계 등 전문가의 현장자문 지원 - 관리단 집회,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, 규약 설정 및 변경, 관리비 및 회계 운영, 공용부분의 보존·관리·변경 	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 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('20. 1월 공포 · 시행 예정)	도시주택실 (건축디자인과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<p>건축물관리법 제정·시행에 따른 체계적 관리</p>	<p>< 신 규 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건축물 안전 확보,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 관리를 위해 건축물관리법 제정('19.4.30), 시행('20.5.1) (주요내용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축물생애관리대장 : 안전점검 등 정보 관리 - 건축물관리계획 :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 시공 건축물은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·군수에게 제출 - 건축물관리점검 : 건축물 관리자등은 규모·용도·건축물 상태 등에 따라 정기점검, 긴급점검, 안전진단 등 실시 -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: 가연성외장재 사용,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의 피난약자시설(의료시설, 노유자시설 등) 건축물 관리자등은 '22.12월말까지 화재안전 성능 보강 추진 - 건축물 해체 허가(신고) : 건축물 관리자등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해체허가(신고) 신청 	<p>건축물관리법 시행 ('20. 5. 1.)</p>	<p>도시주택실 (건축디자인과)</p>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<p>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 확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-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-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(지역난방방식 포함)의 공동주택 -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종전내용 - 입주자등이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름) 	<p>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(’20. 4. 24.)</p>	<p>도시주택실 (공동주택과)</p>
<p>비의무관리 공동주택 관리비내역 공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여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사항 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인 경우 일반관리비, 청소비 등의 비목별 월별 합계액,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의 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	<p>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(’20. 4. 24.)</p>	<p>도시주택실 (공동주택과)</p>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신고 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정 용도의 주민공동시설의 경우에만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신고수리권자에게 신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대시설 또는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신고수리권자에게 신고 	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(’20. 4. 24.)	도시주택실 (공동주택과)
승용차 등록번호 체계 개편 및 디자인 도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승용차(자가용, 렌터카) 등록번호 체계 개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등록번호 자릿수 변경(7자리 → 8자리) ex)12374567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등록번호 체계 개편(7자리 → 8자리)에 추가로 승용차 번호판 반사필름 재질 적용 및 디자인 도입 예정 (2020.7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재귀반사식 필름 재질 적용 국가상징문양 홀로그램 등 적용 	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(’19. 9. 1.)	교통국 (광역교통정책과)
청소년 교통비 지원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기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도내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 신설 만13~23세 청소년에게 교통비 실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원시기 : ’20. 7월(예정) 지원대상 : 만13~23세 청소년 약 43만명 지원내용 : 年12만원 한도 내 지역화폐로 환급 	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조례 제3조 및 15조 (’19. 11. 12.)	교통국 (버스정책과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경기도형 준공영제 (노선입찰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버스노선 운영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한정면허 기반 노선입찰제 도입 - 제도마련, 도민공청회 등 소통 절차, 시범사업 노선선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범사업 노선 운영('20년 초부터 순차적 운영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4시·군 16개 광역버스 노선 120대 '20년 20개 내외 노선 확대 운영(하반기 운영) 	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('19. 10. 1.)	교통국 (공공버스과)
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 실행규정 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근무종료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 -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것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택시요금미터를 임의조작 또는 훼손 금지 등 	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, 제26조 (20. 1. 1.)	교통국 (택시교통과)
경기도 버스 승차대기 알림서비스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스마트폰을 통해 버스 승차대기 알림 및 무정차 신고 서비스 도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기버스정보 앱을 설치하고 버스 승차대기를 누르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하여 정차 유도 - 무정차 운행 근절을 위해 무정차 신고서비스 제공 - 무정차 집중관리 시내버스 노선에 시범 실시 후 확대 	경기도 자체계획 ('20. 12. 예정)	교통국 (교통정보과)
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설현장의 건설근로자 출퇴근기록 수기처리, 퇴직공제부금 별도 시스템으로 신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설근로자 근로일을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 시스템과 연계한 전자단말기를 통해 실시간 전산기록 -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퇴직공제부금 신고 	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('20. 11. 27.)	건설국 (건설정책과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기반시설 체계적 관리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기반시설 체계적 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기반시설 사용을 위한 관리계획수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본목표 - 기반시설 성능평가, 성능개선 등에 대한 실시계획 ※ (기반시설) 도로, 철도, 항만, 수도·전기, 하수도, 하천 등 14개 시설 	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(‘20. 1. 1.)	건설국 (건설정책과)

5 재난안전, 문화·체육·관광 분야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확대 및 보고기간 단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종합정밀점검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된 (아파트는 11층 이상만 해당) 5천㎡ 이상 ◦ 점검결과보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30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종합정밀점검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스프링클러설비 대상 - 물분무등소화설비(아파트 포함)가 설치된 5천㎡ 이상 • 점검결과보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7일 	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 [별표 1] (’20. 8. 14.)	소방재난본부 (재난예방과)
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 기준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시험합격은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험합격은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 	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4조 (’20. 1. 1.)	소방재난본부 (재난예방과)
전통시장·상점가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(시범)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대상: 전통시장법 제2조 해당 전통시장 및 상점 * 노점 및 5일장 제외 • 지원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험 가입 지원(도 30%, 시군 30%, 자부담 40%) - 화재 시 재물손해, 배상책임, 영업중단액, 풍수해 등 보상 	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 (’19. 7. 16.)	경제실 (소상공인과)
통합문화이용권 (문화누리카드) 지원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‘문화누리 카드’ 발급 지원 : 연간8만원 ◦ (사용처)문화예술·여행·체육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금 인상 : 1인당 연간 8만원→9만원 	문화체육관광부 지침 (’20. 1월)	문화체육관광국 (문화증무과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운영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군에서 추진 중인 기존 문화예술사업 및 신규 문화예술사업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경기도 문화의 날(매월 마지막 수요일)'에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※ 매월 마지막 주를 '경기도 문화주간'으로 확대 운영 	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(‘20. 1월)	문화체육관광국 (문화종무과)
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사업 지원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제강점기 왜곡된 문화적 잔재의 발굴·청산·재해석과 관련된 사업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모시기 : '20. 2월말(예정) - 공모대상 : 도내 민간단체 - 지원내용 : 인건비, 제작비, 임차료(공간, 음향 등), 기타 사업수행경비 지원 	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(‘19.12.16 본회의 의결)	문화체육관광국 (문화종무과)
문화누림, 지역화폐 드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경기도문화의전당 자체기획공연 관람객에게 관람료의 20% 내외 지역화폐로 환급 ※ (1~3만원 미만) 4천원권 (3~5만원 미만) 8천원권 (5만원 이상) 1만원권 환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역화폐 환급대상 문화시설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기도문화의전당 -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- 시·군 공공 공연장(6개소) - 박물관·미술관(21개소) 	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(‘20. 1월)	문화체육관광국 (문화종무과)
경기북부어린이 박물관 운영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, 동두천—道 이관을 계기로 경기북부 대표 문화시설로 발돋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콘텐츠 및 프로그램 보강, 시설개선(23억원) - 경기문화재단 운영으로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 	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(‘20. 1월)	문화체육관광국 (문화종무과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유휴공간 문화재생	◦ 경기문화사랑방 및 경기공공예술 창작소 조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존사업 통합 및 확대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대상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기존)건축물 → 지하보도, 고가차도(철도) 하부, 공원, 폐교 등 - 사업규모 확대 : '19년 3개소 → '20년 10개소 	문화예술진흥법,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조례 ('20. 1월)	문화체육관광국 (문화증무과)
경기뮤직플랫폼 조성 및 운영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인디뮤지션과 음악기업의 음악창작 및 공연 공간을 조성하고, 음악기업(뮤지션)을 유치하여 제작음원의 유통·마케팅 지원과 교육·공연 프로그램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개소 시군 공모를 통한 선정·추진 	경기도 자체계획 ('20. 1월)	문화체육관광국 (콘텐츠정책과)
문화기술(CT) 산업육성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청년 선호가 높고 고용유발, 소비재 수출 견인 등 후방 효과가 큰 문화기술(디지털아트) 산업을 신규 콘텐츠 지원 분야로 집중 육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업육성 프로그램, 프로젝트 제작지원, 국제 문화 기술전람회 추진 - 인재양성, 창작자 입주/전시 공간 제공, 이동전시관 운영 	경기도 자체계획 ('20. 1월)	문화체육관광국 (콘텐츠정책과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경기 문화예술교육진흥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기시민예술학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내 성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•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장르특화사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내 청소년 대상 뮤지컬 교육 및 청소년 창작뮤지컬 제작·보급 • 경기도형 학교문화예술교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내 학교대상 교과연계 교육연극 및 공간조성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• 청년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기형 강사인증제 교육프로그램 운영 	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1조제1항 (‘20. 1월)	문화체육관광국 (예술정책과)
취약계층 악기대여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도 내 지역아동센터 대상 악기대여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내용 : 도 내 지역아동센터 대상 악기대여사업 참여 공모·선정 - 지원내용 : 악기대여료(1개소당 4백만원) - 대여방법 : 선정된 지역아동센터 직접 악기대여 	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의 1 (‘20. 1월)	문화체육관광국 (예술정책과)
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기간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저소득 유청소년(만5~만18세) 스포츠강좌 이용료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인당 매월 8만원 범위 내 스포츠체험 참여 지원 - 7개월 의무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의무 지원 기간 확대(7개월 → 8개월) 	20년 스포츠 강좌이용권 사업지침 (‘20. 1월)	문화체육관광국 (체육과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장애인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 기간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저소득 장애인 유청소년 및 성인 일부 (만12~만39세) 스포츠강좌 이용료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인당 매월 8만원 범위 내 스포츠체험 참여 지원 - 6개월 의무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의무 지원 기간 확대(6개월 → 8개월) 	20년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지침 ('20. 1월)	문화체육관광국 (체육과)
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경기도-경기도교육청-24개 시군이 협력하여 초등학교 5학년 대상 클럽 개설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육과정 내(동아리,체육시간), 방과후과정으로 스포츠클럽 운영 - 연간 26시간 학교체육시설 및 공공·민간체육시설 이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기도-경기도교육청-29개 시군이 협력하여 초등학교 4~6학년 대상 클럽 개설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육과정 내(동아리,체육,창의적체험활동시간), 방과후 과정으로 스포츠클럽 운영 - 연간 30시간 학교체육시설 및 공공·민간 체육시설 이용 	경기도 체육진흥조례 ('20. 1월)	문화체육관광국 (체육과)
2020년도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 지원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기도 지역특화 레저스포츠 콘텐츠 개발 및 관광 상품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원대상 : 도내 31개 시·군 - 지원규모 : 시설형 거점개발(2개소) 및 프로그램 육성(3개소) 지원 - 지원종목: 레저스포츠 - 지원방식: 공모사업 추진 	경기도 자체계획 ('20. 1월)	문화체육관광국 (체육과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道 및 시·군 민간체육회장 선출	경기도 및 30개 시·군 체육회장 단체장이 겸직 (시흥시는 민간회장 체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道 및 31개 시·군 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 - '20.1.16. 이후 민간회장 체제 출범 	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 (‘20.1.16.)	문화체육관광국 (체육과)
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생활체육지도자를 31개 시·군에 배치하여 생활체육현장 지도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-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180명 -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162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185명 -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160명 -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(5명) 신규 배치 	문화체육관광부 계획 (‘20. 1월)	문화체육관광국 (체육과)
시·도 등록문화재 제도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국가(문화재청에서)에서만 등록문화재* 제도 운영 * 문화재 지정제도 보완 및 위기에 처한 근·현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('01년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·도에서 등록문화재 제도 운영 가능 - 경기도 : 경기도 등록문화재위원회 구성, 경기도 등록문화재 등록 및 말소 절차, 관리 단체 지정 및 현상변경 행위 등 허가 사항 등 신설 	문화재보호법 제70조 (‘19. 12. 26.)	문화체육관광국 (문화유산과)
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원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도 무형문화재의 원형보전 및 전수를 위하여 매월 전승금 지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道 무형문화재 전승금 인상 지원 - 보유자 '19년 월1,300천원 →'20년 월1,400천원 - 전수교육조교 '19년 월500천원→'20년 월 600천원 - 보유단체 '19년 월800천원 →'20년 월1,000천원 • 道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장학금 신설 : 월250천원 • 道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시 특별지원금 지원 - 보유자 → 명예보유자 : 월1,100천원 - 전수교육조교 → 명예보유자 : 월 500천원 	경기도 자체계획 (‘20. 1월)	문화체육관광국 (문화유산과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문화관광축제 지정제도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문화관광축제 등급제 운영 (대표·최우수·우수·유망) 매년 선정 (차년도 축제를 전년도말 선정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문화관광축제 지정제도 개선('19.11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문화관광축제 등급제 폐지 문화관광축제 매년 평가·선정 대신 2년 주기로 (재) 지정 및 단일 '문화관광축제' 명칭과 지원제도 틀 내에서 차등 없이 동일한 국비 지원 * 축제 현장 및 축제 개최 관련 과정에 대한 평가 (모니터링)는 매년 실시 	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 8 ('19. 4. 9.) 문화체육관광부 지침 ('19.11월)	문화체육관광국 (관광과)
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안전규정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등록 시 안전시설 의무 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 객실마다 화재경보(단독경보형) 감지기 설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존 등록기준에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(개별 난방시) 설치 의무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규등록자 : '19. 11. 19.시행 기존등록자 : '20. 11. 18.까지 (공포한 날로부터 1년 이내) 	관광진흥법 시행령 [별표1] ('19. 11. 19.)	문화체육관광국 (관광과)
품격 있는 세계유산 남한산성 조성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신 규 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남한산성도립공원 방문객 편의 증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남한산성도립공원 무료셔틀버스 운영 검복리주차장 공중화장실 신축 남한산성 상가이용객 주차요금 50% 할인제도 시행 안전하고 쾌적한 도립공원 조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남한산성도립공원 탐방로(남문~북문) 재포장 남한산성도립공원 자연형하천 조성 	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('20. 1월)	문화체육관광국 (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)